

<별첨>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정관 일부 변경 (안) >

현 행	변 경(안)	변경목적
<b>제2조(목적)</b> 당 회사는 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103. <기재생략> <u>104.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투자 및 수출입업 (신설)</u>	<b>제2조(목적)</b> 당 회사는 하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103. (현행과 동일) <u>104. 컴퓨터,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u> <u>105.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u> <u>106. 컴퓨터 제조 및 조립업</u> <u>107. 워크스테이션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u> <u>108. 폐장비 및 폐부품 수리업</u> <u>109.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u> <u>110.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u> <u>111. 전산장비 임대사업</u> <u>112. 리스 및 물품임대업</u> <u>113.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투자 및 수출입업</u>	사업다각화
<b>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b> ①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당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u>(신설)</u>	<b>제8조 &lt;삭제&gt;</b>	주권 전자등록 의무화에 따라 삭제(전자증권법 §25 ①)
<b>제11조(명의개서대리인)</b> ① 당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는 공고한다. ③ 당 회사의 주주 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 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b>제11조(명의개서대리인)</b> ① (좌동) ② (좌동)  ③ 당 회사의 주주 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좌동)	상장법인의 경우 전자증권법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주식 등에 대하여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근거를 신설  주식 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 내용 반영

<p><b>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b></p> <p>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 11 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p>	<p><b>제13조 &lt;삭제&gt;</b></p>	<p>주식 등이 전자등록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항 삭제</p>
<p><b>제14조(주주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p> <p>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p> <p>②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③ 당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b>제14조(주주 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p> <p>① 당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7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p> <p>② (좌동)</p> <p>③ 당 회사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3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 명부의 기재 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는 기준일의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p>	<p>주주명부 폐쇄기간 단축 및 재무제표의 승인기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면서 이를 반영</p>
<p><b>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b></p> <p>제11조, 제13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b>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 규정)</b></p> <p>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p>	<p>제16조의 삭제에 따른 문구정비</p>
<p><b>제18조(소집 시기)</b></p> <p>① 당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b>제18조(소집 시기)</b></p> <p>① (좌동)</p> <p>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p>	<p>재무제표의 승인기관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를 달리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p>
<p><b>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b></p> <p>① ~③ &lt;기재생략&gt;</p> <p>④ (신설)</p>	<p><b>제31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b></p> <p>① ~③ (현행과 동일)</p> <p>④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기타 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p>	<p>상업등기선례에 따라 이사회에서 사내이사와 기타 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할 수 있는 근거 신설</p>
<p><b>제4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 비치 등)</b></p> <p>① 당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1. 대차대조표</p> <p>2. 손익계산서</p> <p>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p> <p>② 감사는 제 1 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p>	<p><b>제44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b></p> <p>①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코스닥상장법인 표준정관 반영</p>

<p>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p> <p>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⑤ 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p> <p>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p> <p>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⑧ 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p><u>(신설)</u></p>	<p><u>제44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u>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p>	<p>「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정 권한의 개정 내용 반영</p>
<p>부칙</p>	<p><b>부칙</b></p> <p>이 정관은 <u>2019년 0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11조, 제13조, 제17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u></p>	<p>효력발생 시기 지정</p>